

# 구내식당 운영업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

- 교육일시 : '16.6.8(수) 16:00 ~ 17:00(1시간)
- 교육실시자 및 장소 : 경영관리팀장 / 본사 구내식당
- 교육대상자 : 7명
  - 경영관리처 : 2명(담당부장, 담당자)
  - 운영업체 : 5명(본사·옥수역 및 3개 별관 영양사)

## ○ 교육내용

- 음식서비스 종사자 안전보건 준수사항
  -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확인
  - 안전보건 준수사항 및 작업안전 수칙
-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·위험 예방 조치
  - 전기 기계·기구 사용시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
  - 전기 기계·기구 설치시 유의사항 등

## ○ 서명부

- 경영관리처

연번	성명	직위	서명	연번	성명	직위	서명
1	오태균	부장	<i>오태균</i> (경영관리처)	2	민정화	대리	<i>민정화</i>

- (주)현대그린푸드

연번	성명	근무지	서명	연번	성명	근무지	서명
1	양혜리	본사	<i>양혜리</i>	4	김지현	신답	<i>김지현</i>
2	정은미	동대문	<i>정은미</i>	5	안희애	옥수	<i>안희애</i> (전파교육)
3	안나라	대림	<i>안나라</i>				

※ 근무지별 조리사, 조리원 전파교육 실시



# 작업 전 안전점검 음식서비스 종사자

직종별



작업 전 안전점검  
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법

2015 - 교육메디언 - 745

음식서비스 종사자는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요식업소, 클럽, 선상 및 열차 등의 내부에서 음식로품을 제공하고, 식자재 운반, 홀서빙 등 전반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주요 유해·위험 요인으로는,

- 작업장 바닥에서의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짐
- 뜨거운 음료나 국 등 취급 중 화상
- 깨진 유리컵 등으로 인한 손 베임, 찰림
- 운반,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
-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위험 등이 있다.



## 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

점검항목

점검결과

조치사항

서빙 중 바닥물기, 이물질 방치로 미끄럼 위험은 없는가?

뜨거운 용기 등에 의한 화상위험은 없는가?

배식 중 이동대차 등 타 물체와 부딪힐 위험이 없는가?

뜨겁거나 차가운 식자재 또는 음식물은 보조기구나 보호장갑을 이용하는가?

식자재 또는 음식물 운반 시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가?

서빙 물건은 양손으로 들어 운반하고 있는가?

20kg을 초과하는 식자재는 나눠서 들거나 2인 이상 또는 대차 등 보조기구를 활용하고 있는가?

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?

베임, 찰림, 감김, 감전 등의 위험요인은 없는가? 있다면 그 대책이 적절한가?

근무 중 휴식 및 수면시간(장소)은 적절한가?

※ 본 점검항목은 참고용으로 사업장 특성(야차사고, 위험성평가 등)에 맞도록 자재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.

# 음식서비스 종사자 안전작업

## 식자재운반

### 주요 위험요인



장애물 등에 의한 걸려 넘어짐



물기 등에 미끄러짐



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요통

### 안전보건 준수사항

- 통로와 시야를 확보하고 목적지를 확인한 후 식자재를 운반한다.
- 바닥에 방치된 물건들을 정리정돈 한다.
- 바닥이 세제나 물로 미끄럽지는 않은지 확인 한다.
- 식자재를 꺼낸 뒤 열린 서랍이나 문 등은 꼭 닫는다.
- 뜨겁거나 차가운 식자재는 보조기구나 보호장갑을 이용한다.

### 작업안전수칙

- 식자재는 몸에 가깝게 밀착하고 발은 어깨넓이로 벌려서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.
- 작업복과 작업모를 단정히 착용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장화를 신는다.
- 한 번에 들 수 있는 식자재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양으로 한다.
- 20kg을 초과하는 식자재는 나눠서 들거나 2인 이상 또는 대차 등 보조기구를 활용한다.
- 자주 사용하는 식자재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.

## 안전한 서빙을 위한 작업안전수칙

- 우선 바닥이 물에 젖어 미끄러운지와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한다.
- 서빙 물건은 꼭 양손으로 들어야 한다. 무거운 쟁반을 한 손으로 들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.
- 손에 물기는 쟁반을 놓칠 수 있음을 유의한다.
- 음식이 뜨겁거나 기름이 튀겨 위험할 경우 꼭 조심하라고 상대방에게 알려준다.

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 
당신의 안전을 지켜주세요.

- 작업 전 안전점검의 습관화 / 실천문화 조성
- 사업주 :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조성 및 지원
  - 관리자 :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, 보고 및 대응
  - 작업자 :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

기업현장의  
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

1. 안전보건표지 부착(위험장소, 설비 등)
2. 안전보건교육 실시(위험요인, 안전작업방법 인지)
3. 안전작업절차 지키기(절차 제정, 준수)
4. 보호구 지급·착용(작업에 적합한 보호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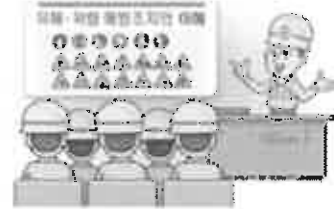
# 일터에서의 유해·위험 예방 조치 전기기계, 기구 적정 설치/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

##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사항

###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03조	전기기계·기구의 적정설치 등
제304조	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
제305조	과전류 차단장치
제306조	교류아크용접기 등
제307조	단로기 등의 개폐

\*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.



## ☑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·위험 예방 조치

### ① 전기 기계·기구의 적정설치 등

- 전기 기계·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
  - 전기 기계·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
  - 습기·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위 환경
  - 전기적·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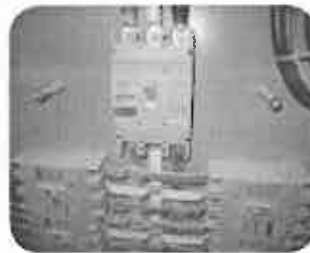
### | 습기, 분진 등 화재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전기기계·기구의 사용 예



습기에 의한 과도한 부식



분진과다 집적



- 전기 기계·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,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

### ②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

- 다음의 전기 기계·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
  -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·기구



-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 (750V이하 직류전압이나 600V 이하의 교류전압)용 전기기계·기구
- 철판·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·기구
-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·기구
-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
- 전기기계·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 또는 교환
-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
  -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.03초 이내일 것. 다만,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mA 이하로, 작동시간은 0.1초 이내로 할 수 있음
  -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·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. 다만,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음
  -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꽃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
  -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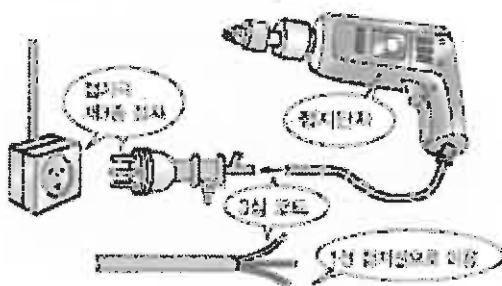


일반형 누전차단기

콘센트형 누전차단기

플러그형

어댑터형



Check Box |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

-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·기구
-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·기구
- 비접지방식의 전로

더 많은 안전보건 정보는?

- ① KOSHA GUIDE E-54-2012 누전차단기의 일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- ② KOSHA GUIDE E-43-2012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저압용 누전차단기에 관한 기술지침
- ③ KOSHA GUIDE E-88-2011 감전방자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과전류 차단장치

과전류(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 단락사고전류, 지락사고전류를 포함)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

-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
- 차단기·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
-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·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



Check Box | MCCB(molded case circuit breaker : 배선용차단기)

- ▶ 저압용으로 개폐기구, 트립장치 등을 절연물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통전상태의 전로를 수동 또는 전기 조작에 의해 개폐할 수 있으며, 과부하 및 단로 등의 이상 상태시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기구를 말한다.
- ▶ 배선용차단기는 교류 600V 이하, 또는 직류 250V 이하의 저압 옥내전로의 보호에 사용되는 molded case 차단기를 말한다.



- ① 제품의 명칭      ② 제품의 형식      ③ 극수
- ④ KS규격 인증 번호      ⑤ 취득 규격 : CE marking
- ⑥ Icu, Ics
  - Icu : 정격차단전류 용량을 표기하는 약호로서 영문 명칭은 "Rated Breaking Capacity"라고 하며, 그 단위는 A로 통상 1000A 이상으로 kA로 표기
  - Ics : 서비스 단락차단용으로 정격차단용량으로 시험한 차단기로 다시 한번 단락전류를 통과하였을 시 최초 용량의 몇 %까지 견디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100%가 최고성능을 가진 제품임
- ⑦ 주파수 및 주위온도      ⑧ 기준규격
- ⑨ Cat. A : Category A라는 제품- 단시간 차단성능이 없는 차단기를 말함
- ⑩ 정격전류 : 규정된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연속 통전되는 최고 전류치
- ⑪ Ui, Uimp
  - Ui는 정격절연전압으로 규정된 조건 하에서 내전압 보증전압
  - Uimp는 정격임펄스 내전압으로 뇌서지에 견디는 전압
- ⑫ 정격차단용량 : 전압별 정격차단용량을 표기

㉞ 교류아크용접기 등

- 아크용접 등(자동용접 제외)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(자동으로 작동되는 것 제외)를 사용하는 경우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
  -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, 밸러스트(Ballast) 탱크,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
  - 추락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
  - 근로자가 물·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



교류아크용접기 및 자동전격방지기

• 용어의 해설

▶ 자동전격방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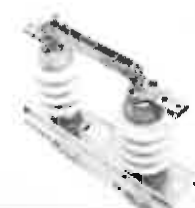
- 용접작업 시에만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출력 측의 2차 무부하 전압을 저하시키는 장치
- 아크발생을 정지시켰을 때 0.1초 이내에 용접기의 출력 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의 안전전압으로 강하시키는 장치

▶ 절연홀더

- 아크용접기의 감전위험성은 2차 무부하 상태 홀더 등 충전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위험이 높으므로 절연홀더를 사용함

㉟ 단로기 등의 개폐

-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(이하 “단로기등”)를 개로·폐로하는 경우 그 단로기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
  - 단, 그 단로기등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·폐로할 수 없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 예외



**경고!** 단로기 조작 시 무부하 확인

「일터에서의 유해·위험 예방 조치」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조항에서 해당 유해·위험 예방 조치 내용을 사진, 삽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것으로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, 위험성평가, 교육 등에 활용하길 바랍니다.